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설정약관』 개정 대비표

1. 대상약관 : 연금저축계좌(집합투자증권)설정약관

2. 주요 변경 내용

①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액 범위 확대사항 반영

②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 사항 반영

3. 시행일 : 2025 년 8 월 7 일

4. 개정 대비표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제 1 조~제 3 조 <생략> 제4조(납입 등) ①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없으며,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 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부터 추가금액도 일체 납입할 수 없다. 1. 연 1,800 만원	제 1 조~제 3 조 <좌동> 제4조(납입 등) ①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u>금액</u> <u>(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u>을 합한 금액(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없으며,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 약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전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부터 추가금액도 일체 납입할 수 없다. 1. 연 1,800 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2.「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3항에 따른 전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에 따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내에 소유한 주택 (이하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하 “주택차액”이라 한다)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u><신설></u> ② ~ ⑤ 생략 제 5 조~제 28 조 <생략>	2.「소득세법」제 59 조의 3 제 3항에 따른 전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 91 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 40 조의 2 제 2 항제 1 호다목에 따라 국내에 소유한 주택 (이하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u>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 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 으로 하며, 이하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u> <u>4.「소득세법 시행령」제 40 조의 2 제 2 항제 1 호라목에 따라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거주자로서 같은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연금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 으로 하며, 이하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u> ② ~ ⑤ 작동 제 5 조~제 28 조 <좌동>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	-------------------------------------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u>민사소송법</u>」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0 조 <생략> <부 칙> 1~12<생략> <u><신설></u> <별첨> <생략>	제2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u>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u>」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가입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가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0 조 <좌동> <부 칙> 1~12 <좌동> <u>13.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u> <별첨> <좌동>	공정위 시정요청 사항 반영
---	--	---------------------------------